

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 ③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 [편집자 주]

<p>글 쓰는 순서</p> <p>I. 건설업 관련 주요 민원 신고사항 지난 호</p> <p>II. 건설관련 법령 벌칙규정 지난 호</p> <p>1. 벌칙의 종류</p> <p>2.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벌칙</p> <p>1) 건설업의 등록, 영업범위 및 신고사항</p>	<p>2)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p> <p>3) 건설공사 시공 및 기술관리 이번 호</p> <p>4)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입찰질서 문란행위 등</p> <p>5) 건설기술관리법 등 타법령 및 기타사항</p> <p>6) 양벌규정</p> <p>7) 건설업관리지침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다음 호</p>
--	--

2.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벌칙

3) 건설공사 시공 및 기술관리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①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자의 배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제40조 법제81조제6호 법제82조제1항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명령 또는 시정지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p>법제40조제1항 법제97조제2호 법제40조제2항 법제100조제2호</p>	<p>원(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30만원
<p>②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 불이행 	<p>법제28조 법제81조제3호 법제82조제1항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2천만원 이하 과징금(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하자공사실적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건축·조경 : 2억 5천만원 • 토목·산업설비 : 6억원 • 전문(가스2·3종, 난방 제외) : 5천만원 	<p>법제28조 법제82조제1항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주요시설물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p>법제28조 법제82조제1항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건설업자, 시공참여자, 현장배치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p>법제93조제1항 법제93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 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법제94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제94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p>③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 시공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제81조제8호 법82조제1항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명령 또는 시정지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시정명령 · 시정지시 불이행시) • 영업정지 1년
	법제83조제9호	
	법제82조제2항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3억원
	법제82조제2항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2억원
	법제82조제2항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1억원
	법제82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p>④ 건설업 시공자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건축물시공 제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 661㎡ 초과 •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3층 이상): 연면적 661㎡ 이하 • 주거용 외 건축물 : 연면적 495㎡ 초과 •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다중이용하는 연면적 495㎡ 이하 상가 건축물의 시공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법제41조 법제96조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p>⑤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p>	법제42조제1항, 제2항 법제100조제2호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50만원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⑥ 건설업자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강구조물공사, 석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11조 법제97조제3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입찰질서 문란행위 등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①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실적, 기술인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자	법제23조제3항 법제23조의2제2항 법제82조제1항제2호의2 법제97조제1호	• 영업정지 4월 (신설 2005. 6. 30)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이 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건축·조경 : 2억 5천만원 - 토건, 산업설비 : 6억원 - 전문(가스2·3종, 난방 제외) : 5천만원 	법제82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 4월
③ 입찰질서 문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법제9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강상식

초콜릿의 역사

초콜릿은 본래 2000년 전부터 중미와 멕시코의 원주민들(마야족, 아즈텍족 포함)이 카카오(cacao)나무의 콩을 갈아 음료로 사용하던 것이다. 1519년, 스페인의 코르테스(Cortes)가 멕시코를 정복한 뒤 스페인에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그러다가 1847년에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딱

딱한 모양의 초콜릿이 등장했는데 이는 코코아 액에 설탕을 섞은 것이었다. 1876년에는 우유를 섞은 밀크 초콜릿이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5) 건설기술관리법 등 타 법령 및 기타사항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①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제82조제1항제5호 가목 법제82조제1항제5호 나목 법제82조제1항제5호 다목 법제82조제1항제5호 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1월또는 과징금 1천만원 • 영업정지 1월또는 과징금 1천만원 • 영업정지 3월또는 과징금 3천만원 • 영업정지 3월또는 과징금 3천만원
①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82조제1항제5호 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2월또는 과징금 2천만원
②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이상 사망한 때 -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 3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법제82조제1항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4월또는 과징금 4천만원 • 영업정지 3월또는 과징금 3천만원 • 영업정지 2월또는 과징금 2천만원
③ 정당한 사유없이 법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법제82조 법제83조 법제96조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말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강
상식

혀 굽어내는 건 생명 연장술의 하나!

인도의 생명 연장술인 아유르베다(ayurveda)나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동으로 만든 혀 세척 도구를 이용해 백태를 굽어냈다. 지금도 요가를 하는 사람들

은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6) 양벌규정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input type="checkbox"/> 양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제98조제1호 법제98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원 이하의 벌금 • 각 해당조의 벌금형

영어유머

I never flirt – 나는 시시덕거리지 않아요!

Two silver-haired old ladies wobbled down the main street in their moth-eaten car, made an illegal turn, and ignored the traffic officer's endeavors to stop them.

He finally caught up with them.

“Didn't you hear my whistle?” he demanded angrily.

The octogenarian at the wheel said,

“Yes, I did, but I never flirt when I'm driving.”

The cop looked astonished, then broke into abroad grin, and said.

“You win, lady! Drive on!”

백발의 두 할머니가 낡아빠진 차를 몰고 큰 길로 나와 비틀거리며 가다 불법유턴을 하고는 교통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했다. 마침내 할머니들을 따라잡은 경찰은 화가 나서 다그쳤다.

“호각소리가 들리지 않던가요?”

운전대를 잡고 있던 팔순의 할머니는 “물론 들었죠. 하지만 난 차를 운전할 때는 남자하고 시시덕거리지를 않는다요.”라고 했다.

경찰은 아연실색하더니 다음 순간 씩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이기셨습니다. 가십시오.”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